

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미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24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5.

발 의 자 : 임미애 · 진성준 · 서미화
최민희 · 홍기원 · 권향엽
김 윤 · 김 현 · 이수진
송재봉 · 이연희 · 문금주
전종덕 · 민홍철 · 윤준병
최혁진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조합과 농협중앙회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조합 등은 조합원·회원의 재산과 상호금융 등 대규모 자금을 취급하는 공적 성격이 큰 조직이므로 그 임원이 횡령·배임·금품수수 등 중대 비위로 인하여 벌금형 등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과 관련하여 「형법」상 사기, 횡령, 배임과 배임수증재 등의 죄를 범하거나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에 대하여는 조합 등의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려는 것임(안 제49조 제1항 제7호의2 신설).

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9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의2. 「형법」 제347조 및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(조합이나 중앙회의 사업과 관련된 죄만 해당된다)를 범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법령(이하 ‘금융관계법령’이라 한다)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49조제1항(제107조제1항, 제112조제1항 및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9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원이 될 수 없다. 다만, 제10호와 제12 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 용한다.	제49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 --- ----- ----- -----. -----.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7의2. 「형법」 제347조 및 제3</u> <u>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</u> <u>(조합이나 중앙회의 사업과</u> <u>관련된 죄만 해당된다)를 범</u> <u>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</u> <u>금융관련법령(이하 ‘금융관계</u> <u>법령’이라 한다)을 위반하여</u> <u>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</u> <u>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</u> <u>나지 아니한 사람</u>
8. ~ 12. (생 략)	8. ~ 12. (현행과 같음)
② · ③ (생 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